

교회와사회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교회의 당면한 사회문제인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해하는 제 원인을 찾아 성서적인 시야에서 바르게 선언하며 책임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천위원회 추천 8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전문인)
3. 기관 추천 5인 : 생태공동체운동본부 1인, 여신도회 2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 조직 당초의 임기에 한하여 반수는 2년, 반수는 4년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6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정)

임원은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로 선정한다.

제8조 (임원 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서기는 본 위원회 회의록과 기타 서류를 관리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

제5장 사업과 선언

제10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제반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11조 (사회선교사 파송)

본 위원회는 효율적·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선교사를 임명·파송한다.

제 12조 (대 사회적 선언)

본 위원회의 대 사회적 선언은 기초적이고 장기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실행위원회를 거쳐 선포한다. 단, 시급한 시사성을 띠는 것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위원장 책임 하에 발표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제 13조

본 위원회는 부여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운동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4조

운동본부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그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 15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위원회의 예산과 유지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개정 및 시행

제 16조 (개정 및 시행)

1. 본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한다.
2. 본 위원회의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970년 9월 제56회 총회 제정
-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